

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대표자 성명	법인명				
	생년월일	법인등록번호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	

기관현황	장비현황					
	직원현황	합계	일반직원	산림기술사	토목기사	산림토목기술자
명		명	명	명	명	

「산지관리법」 제4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(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)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.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국가기술 자격증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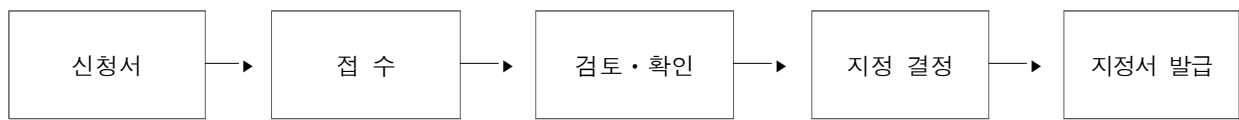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담당부서